

용역 계약서

(주)피씨엔(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진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건명	R-25018-44 초거대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2차)_해외 지식,문화 데이터
계약 기간	'25년 09월 01일 ~ '25년 10월 06일
계약 금액	총 지급금액 : ₩2,983,870원(사업소득세 3.3% 포함 금액) - 사업소득분 : 9월 2,500,000 원 10月 483,870 원
용역 범위	- 프로젝트 내 지원 업무 ※ 상기 용역을 기준으로 "갑"이 요구하는 제반 사항.
지불 방법	상기 용역의 결과물을 납품 완료하고 검수에 합격한 결과물에 대하여 "갑"의 내부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갑"의 의무와 책임

- "갑"은 "을"에게 계약금액을 기한 내에 지불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용역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결과물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갑"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갑"은 "을"에게 업무진행상황과 내용설명을 요구 할 수 있고 용역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3 조 "을"의 의무와 책임

- "을"은 "갑"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 계약상의 "을"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 "을"은 "갑"에게 본 용역의 진행현황에 관하여 진척보고서를 프로젝트 단계별 프로세스에 의거 "갑"에게 보고해야 하며, 산출물 일체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이 없을 시 별도 협의하여 "갑"에게 보고한다.)
- "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에 해당할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한다.
- "을"이 용역수행의 필요에 의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장비 등에 있는 경우 "갑"의 허가 없이는 용역수행 목적 이외 사유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반출,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손·망실된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배상해야 한다.

제 4 조 용역 대금의 지불

- 본 계약상의 용역대금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용역대금은 계약종료일 해당 월 말일까지 정산하여 말일에 집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금융기관 휴일 포함)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며, 해당 월에 전부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5 조 계약 해지 및 해제

- 1) 가, 나, 다 의 사유가 발생할 때 "갑"은 "을"에게 통보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을"이 본 계약업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나. "을"에게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고, 더 이상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판단한 때
 - 다. "사용자"의 프로젝트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계약 실행이 어려울 때
- 2) "을"은 일신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갑"에게 최소 15일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갑"은 프로젝트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을"에게 동의를 구한다.
- 4) "갑"의 책임사유 없이 프로젝트의 취소 등으로 "을"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못한 경우 프로젝트 취소 등이 확정된 날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 검수 및 인수

- 1)"을"이 "갑"의 고객을 직접 응대할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3회 이상 고객의 클레임이 발생하면, "갑"은 "을"에 대해 폐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 2) "갑"은 최종 용역산출물(디자인 산출물 등)을 인도 받은 후 검수 한다.
- 3) "을"이 제공한 용역산출물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갑"은 "을"에게 해당 지적 사항을 수정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을"은 지체 없이 하자를 수정, 보완한 다음 재검사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7 조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 1) 용역완료 후 하자 발생시 "을"은 "갑"과 상호 협의하여 보수하되, 하자보수의 범위는 "을"이 작업하여 "갑"에게 제출한 결과물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 8 조 재산권

- 1) 본 계약으로부터 생성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은 "갑"에게 있다.
- 2) "을"은 본 계약의 용역결과물이 특허권, 저작권을 포함한 제3자의 어떠한 지적재산권, 영업비밀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며, "갑"이 제3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의 침해주장을 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을"은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 3) 이미지 저작권의 문제로 "갑"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을"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단, 이미지 저작권 문제시 이미지 최초 제공자에 한함.)
- 4) "을"은 용역 제공 과정 중 사용한 이미지와 프로그램에 대한 재산권 관리 방안을 "갑"에게 사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본 조 제2항에 의거해 "을"이 책임진다.
- 5) "을"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 소유의 하드웨어로 인한 문제는 "을"이 책임진다.

제 9 조 비밀유지

- 1)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을"이 지며, 본 항의 규정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 2) "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0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지방법원 본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신 보관한다.

제출서류 : "을"의 주민등록등본 1부, 결제계좌 통장사본 1부.

2025년 09월 01일

"갑"

상 호 : (주)피씨엔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46
PCN빌딩

대표이사 : 송 광 현

"을"

주민번호 : 000610-3033317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713
513동 703호

핸 드 폰 :

자택전화 : 비상연락(본인외)

E-mail :

성 명 : 이 진 호 (인)



이 행 서 약 서

당사(혹은 본인)는 아래와 같이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기본 준수사항

1. 어떠한 향응이나 접대 및 금전적,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
2. 업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지 않는다.
3.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지 않는다.
4.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업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5.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상세지침

1. 당사(혹은 본인)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귀사의 임·직원에게 향응 접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개인경조사(결혼, 돌잔치 등)의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3. 기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4. 금액의 크고 작음이나 귀사 임·직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를 두지 않겠습니다.
5. 당사(혹은 본인)는 (주)피씨엔과 작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주)피씨엔의 이름으로 수행할 경우 원발주자 및 제3자에게 수행업체가 (주)피씨엔이 아니라는 일체의 정보 포함)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하겠습니다.
6. 위 기본 준수사항 및 지침을 위반하여 회사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내하겠으며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즉시 손해배상 하겠습니다. 또한, 당사(혹은 본인)의 과실로 인한 계약파기 시 귀사에 계약금 일체를 즉시 반환하고, 귀사의 업무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혹은 본인)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기본 준수사항 및 상세지침에 따라 청렴하게 계약을 이행하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에 따라 책임(연대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서 약 자 주민번호 : 000610-3033317
성 명 : 이 진 호 (인)

(주)피씨엔 대표이사 귀하